

심판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24. 07. 0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오리엔티어링 심판에 대한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의 정의) 심판이라 함은 2급 이상의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심판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제3조(직무내용)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연맹의 공인대회 및 비공인대회에서의 경기심판, 심판 양성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 2 장 심판 양성교육

제4조(교육과정) ① 심판양성 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은 심판 자격증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보수교육은 심판자격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심판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시행자) ① 심판 양성교육은 연맹 주관으로 시행하되 시행자는 교육위원회로 한다.

②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심판 양성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과정의 계획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교육장 확보, 교육강사 위촉, 참가자 모집, 안내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무처는 시행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한다.

제6조(교육강사 위촉) ① 교육과정에는 2명 이상의 교육강사를 위촉해야 한다.

① 교육강사는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1급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심판자격 보유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수강자격) ① 신규교육 수강자격은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보수교육 수강자격은 심판자격 보유자로서 자격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교육과목 및 이수시간) ① 신규교육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은 다음 각호의 예시를 참고하여 12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1. 심판 제도의 이해(1h)
2. 스포츠인권교육-성폭력 & 도핑 예방교육 포함(2h)
3. 경기규정(2h)
4. 대회(경기) 운영(1h)
5. 코스 설정의 이해와 실습(2h)
6. 코스 설치 및 오류 확인(2h)
7. 심판사례 및 심판회의 실습(1h)
8. 오리엔티어링 최근 동향(1h)

②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은 다음 각호의 예시를 참고하여 6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1. 스포츠인권교육(성폭력&도핑예방 포함)(2h)
2. 코스 설치 및 오류 확인(2h)
3. 심판사례 및 심판회의 실습(1h)
4. 오리엔티어링 최근 동향(1h)

② 이수시간은 최소 이수시간을 정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수시간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수강료) ① 신규교육 수강료는 15만원으로 한다,

② 보수교육 수강료는 7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자격검정

제10조(검정시행) ① 시행자는 신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심판 자격검정을 실시한다.

② 자격검정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 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다.

제11조(합격기준)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 4 장 자격 취득 및 관리

제12조(자격취득) ① 심판 자격검정에 합격한 뒤, 본 연맹에 등록신청서(별지1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비 3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2년이 경과되면 교육과정 수료 효력이 상실된다.

③ 검정시험에 합격한 뒤, 1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 수료 및 검정시험 합격 효력이 상실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연맹의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13조(자격증 교부) ① 연맹은 심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심판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심판 자격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심판 자격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자격이 만료되는 해의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자격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해당 자격의 유효기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에 해당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16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이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에 해당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심판 자격을 취득한 자로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3급 자격 보유자는 2급 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심판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심판 자격을 취득한 자로 오리엔티어링 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심판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심판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 ④ 2024년 1월 심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유효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여 자격증을 재발급한다.

[별지 제1호]

오리엔티어링 심판자격(수강, 등록)신청서

과 정 명		오리엔티어링 심판자격 신규과정(), 보수교육()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영문:		반명합판 사진 dpi 300이상 4.5cmx3.5cm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자격 사항	자격증명	예시) 오리엔티어링지도사 2급			
	등록번호	R1804-001	유효기간	20 . . .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 및 이용 목적		상담 및 고지사항 전달, 자격증 발급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자격증 유효기간까지			
수집 및 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필수)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정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등록 무효에 동의하며, 귀 연맹에서 시행하는 심판자격(신규과정, 보수교육)에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귀중					

※ 자격검정 통과시 바로 등록을 할 경우 “(수강, 등록)” 란에 둘 다 표시 바랍니다.